

●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-032호

채권 압류 통지 공시송달

귀사가 체납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귀사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8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1. 귀하(귀사)에게 부과된 「전기통신사업법」 또는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1) 성명(상호) : (주)티앤서비스

체납자	성명(상호)	(주)티앤서비스	사업자등록번호	401-87-01334		
	주소(사업장)	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, 1013호				
채무자 (제3채무자)	기업은행					
압류재산의 표시	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(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)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(향후)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(향후 가산되는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)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,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.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.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. 1.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. 끝.					
압류일자	2023년 4월 18일					
압류사유	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체납	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* (단위: 원)						
세목	고지번호	최초결의일자	최초납부기한	과태료(본세)	가산금	계
과태료	01-78-2200-0453-0000-223	2022-09-06	2022-09-20	7,000,000	294,000	7,294,000

2) 성명(상호) : 서문수(주에이치랩)

체 납 자	성 명 (상 호)	서문수 (주에이치랩)	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	409-81-49437 200111-0*****3		
	주 소 (사업장)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, 809호				
채 무 자 (제 3채 무 자)		신한은행				
압 류 재 산 의 표 시		<p>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(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)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(향후)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(향후 가산되는 증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)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,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</p> <p>1.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</p> <p>2.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</p> <p>3. 1.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. 끝.</p>				
압 류 일 자		2023년 4월 18일				
압 류 사 유		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체납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(단위: 원)						
세 목	고지번호	최초결의일자	최초납부기한	과태료(본세)	가산금	계
과태료	01-78-2200-0 453-0000-222	2022-09-06	2022-09-20	7,000,000	294,000	7,294,000

3) 성명(상호) : 이택교(주에스원솔루션)

체 납 자	성 명 (상 호)	이택교 (주에스원솔루션)	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	689-88-01886 110111-7*****5		
	주 소 (사업장)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, 206호				
채 무 자 (제 3채 무 자)		기업은행 ※ 기업은행, 신한은행 기업류				
압 류 재 산 의 표 시		<p>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(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)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(향후)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(향후 가산되는 증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)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,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</p> <p>1.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</p> <p>2.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</p> <p>3. 1.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. 끝.</p>				
압 류 일 자		2023년 4월 18일				
압 류 사 유		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체납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(단위: 원)						
세 목	고지번호	최초결의일자	최초납부기한	과태료(본세)	가산금	계
과태료	01-78-2200-0 453-0000-015	2022-01-07	2022-03-07	14,107,920	1,995,060	16,102,980

* 실제 체납액은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 부과에 따라 달라짐

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(2023년 4월 27일까지)

3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(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)

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 ☎ 02-2110-1371, msh0308@korea.kr)